



제 429국회 (정기회)
제 3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 〉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971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	3
2. 개정안 부칙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희승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6. 20.

3. 회 부 일 : 2025. 6.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년원에서 학교 교육은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또한 보호소년이 출원 후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처분 기간 중 학적유지와 학업연계는 매우 중요함.

소년원학생은 전적학교의 학적이 유지되는 학생으로서 정규교육과정에 속하는 학생의 지위를 가지므로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년원 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소년원학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고 보호소년 등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학습권 보

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60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상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고 보호소년등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보호소년등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60조의4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¹⁾]

현행	개정안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 <u>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u> 」 제1조의2제4호에서 정한 <u>보호소년등</u>

1) 의안원문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하려 하였으나,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년 9월 19일에 시행되었음.

② ~ ⑨ (생 략)

<신 설>

⑩ (생 략)

제60조(각종학교) ① (생 략)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 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신 설>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수용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60조(각종학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대안학교, 제60조의4에 따른 소년원학교를-----
제60조의5에-----.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4(소년원학교)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

	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년원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년원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 제29조²⁾는 법무부장관이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³⁾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상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⁴⁾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소년원(소년원학교) 현황]

구분	기관(학교명)	대상	교육과정
수도권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보호소년(9·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성교육, 검정고시 등
	안양소년원 (청심여자중고등학교)	보호소년(9·10호) (여성)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성교육, 검정고시 등
중부권	대전소년원 (대전대산학교)	보호소년(7·8·9·10호), 위탁소년	- 의료·재활교육 - 인성교육, 검정고시 등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	보호소년(9·10호) (여성)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성교육, 검정고시 등
호남권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보호소년(8·9·10호)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인성교육, 검정고시 등
	광주소년원 (광주고릉학교)	보호소년(9·10호),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성교육, 검정고시 등
영남권	대구소년원 (읍내중고등학교)	보호소년(9·10호), 위탁소년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성교육, 검정고시 등
	부산소년원 (부산오륜학교)	보호소년(10호),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성교육, 검정고시 등
강원권	춘천소년원 (춘천신촌학교)	보호소년(9·10호),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성교육, 검정고시 등
제주권	제주소년원 (제주한길학교)	보호소년(8·9·10호), 위탁소년	- 직업능력개발훈련 - 인성교육, 검정고시 등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참고

□ 현행법상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소년원학교의 수용기간은 출석일수로 계산되며⁵⁾,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학교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졸업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바⁶⁾, 소년원학교는 출석·학력 등이 인정되는 학교로서 보호소년등의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 아울러, 「보호소년법」 제30조⁷⁾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배치되는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일반 교원들과 차이가 있으나, 일반 교원들과 같이 정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보호소년법」 및 관련 법령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에서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초·중등교육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⁸⁾제1항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보호소년등”을

제31조(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원 등)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포함함으로써 소년원학교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개정안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소년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경우 소년원학교와 공교육 간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소년원학교 학생도 받게 되므로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소년원학교를 ‘각종학교’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법상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등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정규 학교로 인정되지 않고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각종학교로 분류하는 것은 ‘소년원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라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8)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각종학교는 외국인학교(제60조의2)와 대안학교(제60조의3)가 있으며, 2025년 3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온라인학교(제60조의4)를 각종학교의 하나로 포함하여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음⁹⁾.

□ 둘째,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사무의 소관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보호소년법」은 소년원학교를 법무부의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때에도 “교육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¹⁰⁾. 박희승 의원이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¹⁾에 따를 때에도 소년원학교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법무부의 소관 사무인 것으로 해석됨.

□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 소관 「초·중등교육법」에 각종학교의 한 종류로서 소년원학교를 명시할 경우 관련 사무의 소관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여 문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마찬가지로 개정안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학업에 어려

9) 시행일: 2025. 9. 19.

1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1) 의안번호 제10970호

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보호소년등에 대한 교육 지원 사무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사무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의 자료 제출 등 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 제28조제10항은 현행 규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보호소년에 대한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수용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보호소년법」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는 경우 수용기간 동안 전학한 것으로 처리되어 출석일수가 인정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기간 역시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되고 있음¹²⁾.

□ 박희승 의원 발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역시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 제28조제10항의 규정은 현행 법률과 상충되고, 오히려 보호소년등의 처우를 악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일반 소년원에 수용되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지 않은 보호소년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개정안에 따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입법 공백이 사라지게 되므로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감이 해당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학교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소년원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은 보호소년의 학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되며,
- 개정안과 같이 소년원학교를 각종학교로 규정할 경우 보호소년등은 소년원학교라는 특수한 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사회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오히려 소년원학교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보호소년등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범죄·가출·비행행위 등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은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학업중단 위기 상태에 놓여 있어 이미 현행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임. 아울러,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의 경우 관련 정보를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교육부는 개정안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보호소년

법」과 상충되고, 일반 소년원에 대해서도 소년원 운영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교육감에게 출석일수 인정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호소년법」에 일반 소년원 수용기간 동안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출석인정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참고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기존의 제60조의4와 제60조의5를 인용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제60조의5(생략)	제60조의5·제60조의6(현행 제60조의4 및 제60조의5와 같음)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의7(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6제1항에----- ----- ----- ----- -----.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제60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제60조의6에----- ----- ----- -----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60조의8(조사·질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6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

-----제
60조의7제2항에-----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의9(조사·질문) ① -----
-----제60조의7에-----

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교육비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
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illegi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 60 조 의 7 제 1 항 에 -----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
자화) ① -----

제60조의6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11(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
료 등의 수집 등) -----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다.

1. 2. (생략)

제60조의11(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0조의12(통학 지원) (생략)

제62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0조의6-----

1. 2. (현행과 같음)

제60조의12(비용의 징수) ① -----제60조의6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13(통학 지원) (현행 제60조의12와 같음)

제62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0조의7부터 제60조의9까지-----

제67조(벌칙) ① <u>제60조의7제5항을</u>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 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① <u>제60조의8제5항을</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u>제60조의5제1항에</u>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요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④ ----- ----- <u>제60조의6제1항에</u> ----- ----- ----- ----- -----.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각종학교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면서 소년원학교의 설립기준 및 교육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소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³⁾.

문 의 처

02)6788-5186

13) 동 개정안과 함께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970호)도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970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